

『공정과 투명』한 절차로 『행정의 품격』을 위한

■■■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2021. 10. 29.



감사정보담당관

■■■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1. 감사개요

- 기 간 : 2021. 10. 25. ~ 10. 28.(4일간)
- 대 상 : ■■■■
- 감사범위 : 2018. 11. 1. ~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인원 : 1개반 6명(감사담당관 외 5명)
- 감사중점사항
 - 예산, 회계 등 기관운영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 점검
 - 출장, 휴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 등 복무규정 준수여부
 -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지연, 방치 등 직무태만 행위
 - 공사 및 용역 설계 적정성 및 공사 시공 사후 관리 실태
 - 기타 업무 전반의 문제점 및 민원발생 등

2. 감사결과

○ 행정상

(단위 : 건)

계	본 처 분			현지처분		비 고
	시 정	주 의	개선/권고	시 정	주 의	
19	12	5		2		

○ 재정상

(단위 : 천원)

구 분	계	회 수	추징·부과	감 액	지 급
계	1,826	1,826			
본 처 분	1,826	1,826			
현지처분					

○ 신분상

(단위 : 명)

계	중징계	경징계	훈계	주의	비고
-	-	-	-	-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본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징수	감액
계	17건			12	5			1,826	
1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정리 소홀			1					
2	통장의 임명, 해임등 변동시 보고 소홀			1					
3	건설공사 사후정산 소홀			1				94	
4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정산업무 소홀			1				174	
5	용역 계약 준공검사 소홀				1				
6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실시 소홀				1				
7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1				
8	연가보상비 지급소홀			1				143	
9	지역개발 채권 매입 소홀			1				1,305	
10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1					
11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회수 및 폐기 등 업무 소홀			1					
12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1					
1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1				110	
14	농지원부 관리 소홀			1					
15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1				
16	청서 소방안전관리 소홀			1					
17	이장수당 지급 소홀				1				

○ 현지처분 요구사항 목록

【단위 : 건 / 천원】

연번	제 목	처분요구 사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		
		징계	주의	시정	주의	개선	계	회수 징수	감액
계	2 건			2					
1	복무관리 소홀			1					
2	산림소득분야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소홀			1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정리 소홀

【기관명】 ■■■■

【행정상】 주 의

【재정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보존기간 기록물 미정리 현황

일련번호	생산연도	기록물철 제목	보존기간	비 고
1	2012	제증명 발급대장(1)	2017.12.31	
2				
10	2016	팩스민원 신청서(1월-6월)	2019.12.31	

※ 내역 : < 별 첨 > 과 같음

2. 위법·부당내용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기록물의 폐기) ①공공기관이 기록물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제27조의2에 따른 기록물평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같은법 시행령 제43조(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소관 기록물 평가 및 폐기) ①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은 보존중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산부서 의견조회, 법제41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해당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말한다)의 심사 및 제5항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기록물 평가심의회)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영 제43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기록물평가심의회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 공주시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에서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영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평가심의회서에 따라 작성하여 공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공주시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폐기 연장등 정리를 하여야 함에도 “제증명 발급대장(1)” 외 9건의 기록물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정리되지 않고 ■■■■ 기록관에 보관하고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보존기간 기록물을 정리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보존기간 기록물 미정리 현황

일련 번호	생산연도	기록물 제목	보존기간	비 고
1	2012	제증명 발급대장(1)	5년	
2	2012	제증명 발급대장(2)	5년	
3	2012	세외수입징수결의서	5년	
4	2014	정정신고서	5년	
5	2014	거주불명등록신고서	5년	
6	2014	가산금 징수 결의서	5년	
7	2016	출생신고서 사본(2-1)	3년	
8	2016	출생신고서 사본(2-2)	3년	
9	2016	사망신고서 사본	3년	
10	2016	팩스민원 신청서(1월-6월)	3년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시 보고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통장 사직현황

통 별	주 소	성 명	사 직 일	사 유	비 고
@@1통	...	A	2019.6.30	사 임	
\$\$\$통	...	B	2020.3.30	“	
%%%%통	...	C	2020.10.19	“	

2 . 위법 · 부당내용

○ 공주시 이장 · 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임명) ① 이통장은 주민총회 (해당 마을의 이통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마을 규약 또는 관습적으로 운영하는 회의를 말한다)에서 선출한 사람을 읍장 · 면장 · 동장(이하 “읍면동장” 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의 규약 또는 관습적인 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리 · 통의 특성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주민총회의 성립요건과 운영 방법 등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주민총회에서 이통장이 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 공고문을 해당 리 · 통의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후보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④ 이통장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자기 소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⑤ 이장·통장선정심의회에서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심의하여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선정 한다. (개정 2017.11.15.)

⑥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이장·통장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4조(이장·통장선정심의회) 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 이하로 해당 읍·면·동에 이장·통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7.11.15.)

1. 제3조제5항에 따른 이통장 후보자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

2. 제3조제6항에 따라 이통장 적격자 심의 (신설 2017.11.15.)

3. 제6조 해임에 관한 심의 (신설 2017.11.15.)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1.15.)

③ 심의회는 제1항의 기능을 마친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촉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15.)

제9조(보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에서는 통장의 해임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통장명부 정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통장의 해임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와 통장명부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사후정산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94,000원(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금액:천원)

공 사 명	공 사 내 용	도급액(천원)		증·감	공사기간	지적내용	도급자
		계약	정산				
합계	2건	27,500	27,406	94			
@@동 배수로 설치공사	플룸관(2000* 1000) 설치 L=68m	15,500	15,449	51	2021.03.02. ~2021.03.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미정산	AA
###통 !!!!길 가드레일 설치공사	가드레일 설치 L=296m	12,000	11,957	43	2021.03.04. ~2021.03.2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금액 미정산	BB

2.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1항(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명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해당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 정산할 수 있다.
-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동 배수로 설치

공사의 1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에 대하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를 하였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인지 확인하여야 하나 관련서류를 준공일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건설기계대여대금 발급금액 94천원을 정산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건설사업 추진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을 사용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된 건설공사 2건의 합계 94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정산업무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174,000원(회수)

【지적내용】

1. 현 황

(금액 : 천원)

용역명	추정공사비		설계용역비 (도급액)		증.감	용역 기간	도급자
	산정	납품	산정	정산			
계	83,000	80,180	5,145	4,971	-174		
2019년 제2회 추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83,000	80,180	5,145	4,971	-174	2019.09.03. ~2019.09.25	CC

2. 위법·부당사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21-137호) 제1장(총칙)제5조(대가의 조정)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엔지니어링사업 계약에 있어 사업기간, 사업규모 변경 등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대가를 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9년 제2회 추경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정공사비 83,000천원에 대하여 공사비요율에 의한 방식에 따라 계상, 용역비를 산출하였고, 실시설계용역 발주 후 5,145천원에 CC와 계약, 2019.09.03. 착수하여 2019.09.25. 준공하였으며 &&&&통 마을안길

아스콘덧씌우기 외 4건의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 80,180천원에 확정하였다.

- 그러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준공하여야 함에도 용역준공 후 현재까지도 감액하여야 할 용역비 174천원에 대하여 필요한 설계(변경)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용역설계 및 감독의 의무 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용역사업 추진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정산하지 않고 과다하게 지급된 실시설계용역비 1건의 합계 174천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용역 계약 준공검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준공검사 현황

일련번호	계 약 명	도급(납품)자	계약금액 (천원)	준공계 제출일	준공검사일	준공검사 기 한	지연일	비 고
	1건							
1	***** 국기계양대 설치사업	DD	2,305	2018.10.26.	2018.12.14	2018.11.8.	35	

2. 위법·부당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17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같은법 시행령 제64조(검사)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

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럼에도 ■■■■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아무런 사유 없이 ***** 국기게양대 설치 사업에 대하여 위 준공검사 현황과 같이 35일 준공검사를 지연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미 실시 및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하자검사 현황

구 분		정기 하자검사			완료검사				비 고
		대상	검사	미검사	대상	검사	미검사	기한 미준수	
계		563	474	89	162	38	124	157	
2018년	하반기	77	77	0	8	8	0	6	
2019년	상반기	75	75	0	27	0	27	27	
	하반기	46	0	46	22	0	22	22	
2020년	상반기	151	148	3	22	4	18	22	
	하반기	120	95	25	68	11	57	68	
2021년	상반기	94	79	15	15	15	0	12	10.28.현재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사가 완료된 경우 하자검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에 매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되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될 때에도 마지막으로 하자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정기 하자검사와는 별도로 하자(만료)검사를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725건(정기 563건, 만료 162건)에 대하여 만료 124건의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157건에 대하여 만료 14일 이내 검사하지 않았음.
 - 이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담보책임기간 이후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조치는 자체예산으로 보수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과목 부적정

지출 사유	지출금액	지급일자	집행과목	적정과목	비고
4건	758,000				
차재료 구입	250,000	2018.11.12.	부서	기관	자체계획 미수립
차재료(커피) 구입	59,000	2019.02.25.	부서	기관	
차재료(커피) 구입	164,000	2019.05.27.	부서	기관	
직원 및 내방객을 위한 음료수 구입	285,000	2019.12.20.	부서	기관	

○ 50만원 이상 명단 미첨부

지출 사유	지출금액	지급일자	명단여부	비고
1건	570,000			
연말 직원 노고 격려와 화합을 위한 송년 만찬 급식	570,000	2018.12.28.	부	자체계획 미수립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별표의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제8호(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가목의 규정에 따라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및 다과재료를 구입할 수 있다.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공통경비이므로 부서장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소수의 일부 직원이 아닌 전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집행되어야 한다.
- ⇒ 그러함에도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부서운영비를 집행하면서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목적의 방문민원인 접대 목적의 사무실 운영 음료를 구입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 그러함에도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5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도 주된 상대방의 소속 등을 기재한 명단을 증빙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연가보상비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환 수

【지적내용】

1. 현 황

(단위 원)

연 도	성 명	구 분	연가 가능 일수	연가 실시	미사용 연가 일 수	미근무 개월수	연가 보상 일수	적정 연가 보상 일수	실지급액	적 정 지급액	과 다 지급액	비 고
계									240,790	97,570	143,220	
2019	가	실 지 급	14	10	4	0	4	-	195,150	-	-	2018.3.12. 임용 (2년 미만)
		적 지 정 급	12	10	2	0	-	2	-	97,570	97,580	
	나	실 지 급	3	2	1	0	1	-	45,640	-	-	2019.10.17. 임용 (2개월)
		적 지 정 급	2	2	0	0	-	0	-	0	45,640	

2.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말하며,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에서 반영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란 같은 영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제1항에 따른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각각 공제한 일수 및 제3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제2항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그러함에도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가” 외 1명의 연가보상일수 계산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오반영하여 총액 143,220원을 과다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산정된 연가보상비보다 과다지급 된 금액(143,220원)을 환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공채 매입 징수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환 수

【지적내용】

1. 현 황

(단위 원)

사 업 명	대 가 지급일	계약금액 (지급금액)	공급가액	적정 금액	매입 금액	과소 매입 금액	도급자	비 고
합 계	48건	146,014	131,413	3,055	1,860	1,305		명령 번호
1	2018 12/4	5,500	4,950	125	75	50	A	192
2	2018 12/7	2,305	2,075	50	30	20	B	524
3	2019 2/20	3,460	3,114	75	45	30	C	55
4	2019 3/6	5,490	4,941	120	70	50	D	74
5	2019 3/15	2,460	2,214	55	30	25	E	85
6	2019 3/15	3,440	3,096	75	45	30	F	86
7	2019 3/19	9,410	8,469	210	125	85	G	89
8	2019 3/22	5,960	5,364	130	80	55	H	92
9	2019 3/22	5,520	4,968	20	75	50	I	93
10	2019 4/8	2,200	1,980	50	35	15	J	115
11	2019 4/29	1,920	1,728	40	25	15	K	146
12	2019 4/29	3,380	3,042	75	45	30	L	147
13	2019 5/7	1,436	1,292	30	15	15	M	156
14	2019 5/8	4,683	4,215	105	60	45	N	157
15	2019 5/10	1,950	1,755	40	25	15	O	25
16	2019 5/10	1,320	1,188	30	15	15	P	161
17	2019 5/24	4,450	4,005	100	60	40	Q	28
18	2019 6/10	1,860	1,674	40	15	25	R	32
19	2019 6/10	1,320	1,188	30	15	15	S	33
20	2019 6/18	2,950	2,655	65	40	25	T	37

21	2019 7/3	2,830	2,547	60	35	25	U	47
22	2019 7/3	2,340	2,106	50	30	20	V	48
23	2019 7/11	2,560	2,304	55	30	25	W	54
24	2019 7/15	4,460	4,014	100	60	40	X	239
25	2019 7/25	1,020	918	20		20	Y	63
26	2019 8/21	1,430	1,287	30	15	15	Z	67
27	2019 9/11	1,040	936	20	15	5	가	300
28	2019 9/11	1,650	1,485	35	15	20	나	301
29	2019 10/5	6,070	5,463	135		135	다	343
30	2019 10/24	1,053	948	20		20	라	99
31	2019 10/30	10,880	9,792	245	145	100	마	354
32	2019 10/30	2,390	2,151	50	30	20	바	355
33	2019 10/30	2,470	2,223	55	30	25	사	356
34	2019 10/30	1,000	900	20		20	아	357
35	2019 11/8	1,330	1,197	30	15	15	자	374
36	2019 11/13	2,140	1,926	45	25	20	차	378
37	2020 2/4	1,650	1,485	35	30	5	카	28
38	2020 2/4	2,070	1,863	45	35	10	타	30
39	2020 2/4	1,710	1,539	35	30	5	파	31
40	2020 2/28	3,200	2,880	70	55	15	하	57
41	2020 3/4	1,620	1,458	35	25	10	가	67
42	2020 5/4	2,930	2,637	65	50	15	나	143
43	2020 5/4	1,730	1,557	35	30	5	다	150
44	2020 6/1	3,180	2,862	70	55	15	라	183
45	2020 6/10	4,470	4,023	100	80	20	마	199
46	2020 6/29	3,280	2,952	70	55	15	바	224
47	2019 6/13	1,497	1,347	20	15	5	사	201
48	2019 9/30	3,000	2,700	40	30	10	아	320

2. 위법·부당사항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1조(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가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금공급가액의 2.5/100를,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인 경우에는 대금공급가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계약금액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하여야 한다.

⇒ 그러함에도 ■■■■ 주민센터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아파트 웬스공사 외 47

건(총 공급금액 131,413천원)을 계약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 1,305천원을
과소 매입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지역개발채권의 매
입대상 및 기준)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1,305,000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등록증 회수 업무 소홀

【기관명】 ■■■■

【행정상】 시 정

【재정상】 없음

【지적내용】

1. 장애인 자격상실자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현황

* 대상기간 : 2018. 11. 1. ~ 현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1	AA	18.05.20.	청각	사망말소	20181125	부	미송달	
2	BB	23.04.08.	청각	사망말소	20181118	부	미송달	
3	CC	27.01.13.	지체	사망말소	20201010	부	미송달	
4	DD	28.03.01.	시각	사망말소	20190905	부	미송달	
5	AA	28.09.29.	청각	사망말소	20210528	부	미송달	
6	BB	28.12.16.	지체	사망말소	20200523	부	미송달	
7	CC	29.03.15.	뇌병변	사망말소	20190315	부	미송달	
8	DD	31.02.17.	청각	사망말소	20210614	부	미송달	
9	AA	31.12.19.	지체	사망말소	20190209	부	미송달	
10	BB	32.12.02.	시각	사망말소	20200813	부	미송달	
11	CC	33.03.05.	청각	사망말소	20201029	부	미송달	
12	DD	33.10.20.	지체	사망말소	20210417	부	미송달	
13	AA	34.09.15.	시각	사망말소	20181209	부	미송달	
14	BB	34.09.19.	뇌병변	사망말소	20210725	부	미송달	
15	CC	34.10.02.	지체	사망말소	20210607	부	미송달	
16	DD	34.11.29.	청각	사망말소	20190821	부	미송달	
17	AA	34.12.25.	뇌병변	사망말소	20191121	부	미송달	
18	BB	35.02.15.	청각	사망말소	20190108	부	미송달	
19	CC	35.03.18.	뇌병변	사망말소	20200216	부	미송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20	DD	35.09.06.	호흡기	사망말소	20200124	부	미송달	
21	AA	35.09.15.	지체	사망말소	20190922	부	미송달	
22	BB	36.03.03.	지체	사망말소	20190405	부	미송달	
23	CC	37.08.20.	지체	사망말소	20200504	부	미송달	
24	DD	38.02.23.	지체	사망말소	20210525	부	미송달	
25	AA	38.10.01.	뇌병변	사망말소	20210501	부	미송달	
26	BB	39.07.26.	심장	사망말소	20181005	부	미송달	
27	CC	39.12.05.	뇌병변	사망말소	20210206	부	미송달	
28	DD	40.02.29.	언어	사망말소	20201009	부	미송달	
29	가가	40.11.17.	지체	사망말소	20210322	부	미송달	
30	나나	41.04.20.	지체	사망말소	20200529	부	미송달	
31	다다	41.12.14.	정신	사망말소	20210219	부	미송달	
32	라라	41.12.15.	지체	사망말소	20200818	부	미송달	
33	가가	41.12.15.	뇌병변	사망말소	20210211	부	미송달	
34	나나	42.06.17.	지체	사망말소	20201203	부	미송달	
35	다다	42.07.10.	신장	사망말소	20210315	부	미송달	
36	라라	43.01.05.	청각	사망말소	20210313	부	미송달	
37	가가	44.04.28.	신장	사망말소	20200418	부	미송달	
38	나나	44.07.02.	청각	사망말소	20200629	부	미송달	
39	다다	47.07.27.	지체	사망말소	20210206	부	미송달	
40	라라	48.04.23.	지체	사망말소	20201001	부	미송달	
41	가가	49.05.15.	지체	사망말소	20210307	부	미송달	
42	나나	58.09.27.	지적	사망말소	20200808	부	미송달	
43	다다	60.10.20.	지체	사망말소	20190912	부	미송달	
44	라라	62.04.30.	뇌병변	사망말소	20190901	부	미송달	
45	가가	62.11.19.	청각	사망말소	20200209	부	미송달	
46	나나	66.11.30.	정신	사망말소	20210213	부	미송달	
47	다다	67.02.27.	지체	사망말소	20200210	부	미송달	
48	라라	67.05.02.	지체	사망말소	20190128	부	미송달	
49	가가	69.02.24.	신장	사망말소	20191111	부	미송달	
50	나나	74.11.01.	지체	사망말소	20210627	부	미송달	
51	다다	50.04.13.	시각	사망말소	20200924	부	미송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유형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52	라라	45.10.07.	장루요루	사망말소	20210524	부	미송달	
53	가가	62.03.01.	지체	사망말소	20210302	부	미송달	
54	나나	49.01.03.	신장	사망말소	20210512	부	미송달	
55	다다	46.06.10.	청각	사망말소	20210603	부	미송달	
56	라라	64.03.12.	지체	사망말소	20190905	부	미송달	
57	거거	58.04.16.	지체	사망말소	20200306	부	미송달	
58	너너	70.11.14.	신장	사망말소	20210622	부	미송달	
59	더더	52.07.01.	신장	사망말소	20210818	부	미송달	

2. 위법·부당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제3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사람과 법정대리인 등 및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사람 등에게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중복발급 및 양도·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증을 취득한 경우
-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등록의 취소, 등록증의 반환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또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에 따라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별지8호 서식의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 11 .1.부터 현재까지 사망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된 59명에 대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미회수 하였으며,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미발송 하는 등 장애인 등록증 회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장애인등록증 미회수 된 59명에 대하여 즉시 반환통보서를 송달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장애인자동차 표지판 회수 및 폐기 등 업무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 대상기간 : 2018.11.1.~현재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장애 등급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1	AAA	35.02.15.	청각	대상자사망	20190208	부	미송달	
2	BBB	45.05.06.	청각	차적변경(폐차)	20191112	부	미송달	
3	CCC	63.04.06.	시각	차적변경(폐차)	20191112	부	미송달	
4	DDD	67.02.27.	지체	대상자사망	20200303	부	미송달	
5	EEE	50.04.13.	시각	대상자사망	20201013	부	미송달	
6	FFF	38.08.24.	청각	차적변경(폐차)	20201118	부	미송달	
7	GGG	55.12.31.	지체	차적변경(폐차)	20201118	부	미송달	
8	HHH	53.08.05.	뇌병변	차적변경(폐차)	20201118	부	미송달	
9	III	58.12.16.	청각	차적변경(폐차)	20201118	부	미송달	
10	JJJ	96.05.17.	지적	차적변경(폐차)	20201118	부	미송달	
11	KKK	84.03.07.	지체	차적변경 (소유주변동)	20201201	부	미송달	
12	LLL	41.12.15.	뇌병변	대상자사망	20210303	부	미송달	
13	MMM	49.05.15.	지체	대상자사망	20210311	부	미송달	
14	NNN	34.10.02.	지체	대상자사망	20210626	부	미송달	
15	OOO	74.11.01.	지체	대상자사망	20210701	부	미송달	
16	PPP	64.03.12.	지체	차적변경(폐차)	20211020	부	미송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장애 등급	자격상실		장애인등록증 반납 현황		비고
				사유	취소일	반납여부	반납통보서 송달 일자	
17	QQQ	39.04.20.	청각	차적변경(폐차)	20211020	부	미송달	
18	RRR	56.12.15.	시각	차적변경(폐차)	20211020	부	미송달	
19	SSS	68.12.25.	청각	차적변경(폐차)	20211020	부	미송달	

○ 「장애인 복지업무 사업안내서」 제4장 장애인편의증진 6.표지 관리 등 내용을 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신청 및 발급사항을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권의 변동,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자 명의의 차량일 경우는 차량소유자인 보호자의 주민등록 변동사항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자동차 표지 회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2018. 11 .1.부터 현재까지 19명의 장애인이 발급받은 장애인자동차표지판이 회수 및 폐기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분 요구 】

■■■■장은

○ 관련법령에 따라 사망 등으로 인해 회수·폐기 사유가 발생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을 즉시 회수·폐기하고 관련 자료를 행복e음에 입력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장기 미수령 주민등록증 보관 현황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발급일자
1	가가	930401	충청남도 보령시 큰오랏3길	2017-06-15
2	냐냐	871205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17-06-23
3	다다	950805	세종특별자치시 만남로	2017-07-07
4	랴랴	91062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017-07-13
5	마마	951009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2017-07-21
6	바바	940802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2017-08-14
7	샤샤	9702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2017-09-11
8	야야	880914	전라남도 광양시 금영로	2017-10-31
9	자자	900108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2017-11-13

2.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 사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신규·재발급 신청한 후 3년

이 지난 후에도 미수령한 주민등록증은 파기하도록 되어있으며 주민등록지 외 교부기관에서 보관중인 재발급된 증을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아니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으로 등기 우송하고 그 사항을 주민등록증발급대장에 수기정리하게 되어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신규·재발급 신청한 후 3년이 지났으나 미수령한 주민등록증 9매를 정리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처분요구】

■■■■장은

- 보관 중인 장기미수령증을 정리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수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미징수 현황

연번	신청일자	발급사유	생년월일	성 명	수 수 료 징수여부	회수여부
1	20200102	분실	530330	aa	부	
2	20200106	분실	941028	bb	부	
3	20200128	분실	591114	cc	부	
4	20200205	분실	980205	dd	부	
5	20200331	분실	581230	ee	부	
6	20200501	그밖의사유 (보안기능추가)	891122	ff	부	부
7	20200616	분실	501113	gg	부	
8	20200622	분실	960406	hh	부	
9	20200629	분실	540915	ii	부	
10	20200713	분실	430101	jj	부	
11	20200824	분실	620310	kk	부	
12	20200825	분실	990721	ll	부	

연번	신청일자	발급사유	생년월일	성명	수수료징수여부	회수여부
13	20200903	분실	561101	nn	부	
14	20201005	분실	670717	oo	부	
15	20201103	그밖의사유 (보안기능추가)	630217	pp	부	부
16	20201109	분실	961210	qq	부	
17	20201201	분실	920222	rr	부	
18	20201208	분실	991122	ss	부	
19	20210217	그밖의사유 (보안기능추가)	640228	tt	부	부
20	20210226	그밖의사유 (보안기능추가)	730629	uu	부	부
21	20210614	그밖의사유 (보안기능추가)	581126	vv	부	부
22	20210825	분실	530307	ww	부	

2. 위법·부당내용

-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분실·훼손의 경우에는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주민등록사무편람에는 보안 미적용 증(2006. 11. 1. 이전 발급)은 재발급 시 재발급 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다면 수수료는 무료이나 반납하지 않는다면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aa 외 16명의 주민등록증을 ‘분실’의 사유로 재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며 ff 외 4명의 주민등록증을 ‘보안기능추

가' 의 사유로 재발급하면서 보안 미적용 증을 회수하여야 하나 회수하지 않고 수수료 총 110,000원을 면제한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 ■■■■장은 「주민등록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7조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라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110,000원을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원부 관리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농지원부 정비대상 현황

농지원부 정비대상						비고
총계	소유권 변동	임차종료 농가	한세대 농지원부 중복	경작 미달자	경작 확인대상	
129	8	13	6	91	11	

※2021.10.28.현재 새올행정시스템 기준

2. 위법·부당사항

○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1항 및 3항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農地原簿)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농지원부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규정에 따르면 농지원부는 1천

제공미터 이상의 농지 또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농지업무편람(농림축산식품부) “제3장 농지원부, 3. 농지원부관리, 나. 농지원부 정비”에 따르면 소유권 변경된 농지는 현실에 맞게 수정, 임차종료농가는 개인간 임대차농지는 임차농에게 ‘임차기간만료농지 정비계획 통보’ 후 20일 이내 소명이 없는 경우 직권삭제하고, 농지은행, 임대차 농지는 농지은행의 임대차 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정비, 한세대에 2개 이상 중복 구축된 농지원부는 농업경영을 주도하는 농가주를 기준으로 농지원부를 정리한 후 나머지 농지원부는 삭제 처리, 경작면적이 기준면적 1,000㎡미만일 경우(시설재배의 경우 300㎡미만) 농지원부 폐쇄 및 사본편철 처리, 경작사실확인대상은 해당 농지의 경작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정비하도록 하는 등 농지원부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리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럼에도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5개 항목 129건에 대하여 농지원부 정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장은 농지업무편람 농지원부 정비를 참고하여 농지원부 일체 정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농지원부 정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현황

신청일자 발급일자	신청인	농지소재지		취득면적 (㎡)	초과면적 (㎡)	비고
		리·동	번지			
2021.01.25. 2021.01.27.	@@ ##	- -	359 312-4 319-2	63 1,093 787	943	동일세대원 소유상한 (1,000㎡) 면적초과
2020.11.16. 2020.11.17.	!! ~~	- -	359 177-13 292-3 321-3	63 1,179 1,986 1,995	4,587.6	
	\$\$	-	50	364.6		

2. 위법·부당사항

○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제한),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나,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 1천㎡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

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 또는 면장에
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농
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르면 시장, 구청장, 읍면 또는 면장은 농
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
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
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1천㎡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따라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시 세대
원 전부가 소유하는 농지의 총 면적이 1천㎡ 이내인 경우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 또한 「농지법」 제8조의3(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에 따르면 시·
구·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취득하려는 농지의 세대소유 면적의
합이 1천㎡ 초과인 2건에 대하여 주말·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취득자
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고,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업경영의 목적으
로 신청한 3건에 대하여 서류 보완없이 발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 ■■■■장은 농지법 등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
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청사 소방안전관리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시 정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소방안전관리 현황

연도	소방계획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훈련	비고
2018	미수립	-	-	
2019	미수립	-	-	
2020	미수립	-	-	
2021	미수립	-	-	

2. 위법·부당 내용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신체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2. 소방안전관리의 업

무대행 3.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 4. 근무자 등에 대한 소방
훈련 및 교육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하 “
기관장“이라 한다)은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
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책
임을 진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
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에서는 2018년~감사일 현재까지 소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았
으며,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처 분 요 구 】

-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간 소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
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이장수당 지급 소홀

【기 관 명】 ■■■■

【행 정 상】 주 의

【재 정 상】 없 음

【지적내용】

1. 현 황

○ 이장기본수당 지급일 부적정

연번	지급월	지급일	공무원 보수일	지연일 (조기지급일)	비고
1	2019. 3.	3. 22.	3. 20.	2	
2	2019. 4.	4. 22.	4. 19.	3	
3	2019. 7.	7. 22.	7. 19.	3	추가지급
4	2019. 9.	9. 24.	9. 20.	4	
5	2019. 11.	11. 18.	11. 20.	-2	
6	2019. 12.	12. 18.	12. 20.	-2	
7	2020. 3.	3. 23.	3. 20.	3	
8	2020. 5.	5. 19.	5. 20.	-1	
9	2021. 3.	3. 18.	3. 19.	-1	
10	2021. 6.	6. 17.	6. 18.	-1	
11	2021. 7.	7. 16.	7. 20.	-4	
12	2021. 8.	8. 17.	8. 20.	-3	
13	2021. 9.	9. 16.	9. 20.	-4	

2.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통·리·반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

에 따르면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 그러함에도 ■■■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이장 기본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보수지급일(20일)에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장 기본수당 13건 중 8건은 최소 1일, 최대 4일 조기 지급하였으며, 5건은 최소 2일, 최대 4일 지연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 분 요 구 】

■■■장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및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